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97
----------	-----

제 출 일 : 2026. 3. 5.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 1. 개정 이유

국가정책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통합돌봄 전담 조직 신설

- 명칭변경 : 복지정책과(→통합돌봄과)

나. 다산건강생활지원센터 이전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별표 2)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6. 2. 5. ~ 2026. 2. 12. (7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

가) 협의기간 : 2026. 1. 19. ~ 2026. 2. 12. (24일간)

나) 협의결과

- 성별영향평가(여성아동과) : 해당사항 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관) : 해당사항 없음

- 규제심사(의회법무과) : 규제심사 대상 아님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복지정책과”를 “통합돌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복지·통합돌봄정책 총괄, 돌봄지원, 돌봄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6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양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8조제6항 중 “복지정책과장”을 “가족·다문화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 ② 남양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 중 “복지정책과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

소관 관·과		정책기획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정책기획과장 김 병 기
	팀장 직위·성명	조직관리팀장 김 성 수
	담당자 성명·전화	권 혁 섭 (031-590-8933)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별표 2]

보건지소·건강생활지원센터·보건진료소의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11조제4항 관련)

명 칭	위 치 (소재지)	관할구역
조안보건지소	조안면 북한강로 433	조안면 전지역
별내보건지소	별내면 청학로 86	별내면 전지역
와부건강생활지원센터	와부읍 월문천로 35	와부읍, 조안면 전지역
오남건강생활지원센터	오남읍 진건오남로 806-34	오남읍 전지역
별내건강생활지원센터	별내3로 64-21(별내동)	별내면, 별내동 전지역
호평건강생활지원센터	호평로68번길 21(호평동)	호평동, 평내동 전지역
진건건강생활지원센터	진건오남로 41-19(진건읍)	진건읍, 퇴계원읍 전지역
시우보건진료소	조안면 고래산로 413-48	시우리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복지국) ① 복지국에 <u>복지</u> 정책과, 복지행정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과 및 보육과를 둔다.</p> <p>② 복지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복지정책 총괄, 가족·다문화, 통합돌봄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u></p> <p>2. ~ 6. (생략)</p>	<p>제7조(복지국) ① ----- <u>통합돌</u> <u>봄과</u>----- ----- -----.</p> <p>② ----- -----.</p> <p>1. <u>복지·통합돌봄정책 총괄, 돌봄 지원, 돌봄협력, 통합사례관리 및 가족·다문화에 관한 사항</u></p> <p>2. ~ 6. (현행과 같음)</p>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한 행정기구의 명칭변경 등에 따른 후속 조치는 조례 개정 이후 부서별 추진 예정이며,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비용발생 요인 추계가 어려움

###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변경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제3조제2항제2호의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 김 병 기

## 붙임2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2026A경기남양009)

1. 정책기획과-1237(2026. 1. 3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제출한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법령에 해당하므로, 제출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주무관 이연희 여성정책팀장 연가 여성아동과장 배진위 2026. 2. 2.  
협조자  
시행 여성아동과-4305 (2026. 2. 2.) 접수 정책기획과-1290 (2026. 2. 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별관4층 여성아동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3965 팩스번호 031-590-2269 / [yhlee0127@korea.kr](mailto:yhlee0127@korea.kr) / 비공개(5)

- 정약몽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

### 붙임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남양주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 규칙 제3조(평가대상) 규정에 따라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은 부패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 붙임 4 규제심사 결과

- 오늘과 내일을 잇는 미래도시 남양주 -



남 양 주 시



수신 정책기획과장  
(경유)

제목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5건)

- 남양주시 정책기획과-1261(2026. 1. 30.)호와 관련됩니다.
-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등 5개의 자치법규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음에 따라,

**【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 결과 개요 】**

자치법규명	주요내용	규제 여부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행정기구명, 직속기관의 위치 및 관할구역 규정	해당없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시 소속 공무원 정원 총수 변동사항 규정	해당없음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직위명 변경, 부서별 분장사무 정비 등	해당없음
남양주시 지방공무원정원 규칙	시 조직별 정원 조정 반영	해당없음
남양주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시 조직 전결사무 신설	해당없음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에, 「남양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규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끝.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주무관 조한기      규제개혁팀장 인재현      의회법무과장 이봉규      2026. 2. 2.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1770      (2026. 2. 2.)      접수 정책기획과-1311      (2026. 2. 2.)

우 12232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남양주시청 제1청사 별관 4층 의회법무과 (금곡동)      / http://www.nyj.go.kr

전화번호 031-590-7320      팩스번호 031-590-2900      / hgj1235@korea.kr      / 비공개(5)

- 정약용의 상상을 깨우는 남양주 -